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김 영 주*

-
- I. 서 론
 - II. 중재절차의 효율성 확보
 - III. 중재절차의 신속성 강화
 - IV. 중재절차의 공정성 담보
 - V. 시사점 및 결론
-

주제어 : ICC 중재규칙 2012, 사건관리회의, 긴급중재인,
복합적 중재제도, 다수 당사자 중재제도

I. 서 론

1923년 설립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한다)의 중재법원은 국제상사중재 분야에서 가장 국제적이며 선도적인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상설중재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¹⁾ 매년 800여 건 이상의 국제중재사건들이 ICC 중재법원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²⁾ 이 수치는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C 중재법원이 채택한 ‘조정과 중재에 관한 규칙’(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의 국제적 활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ICC는 급증하는 국제중재 수요에 부응하며 기존 체제의 실무적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1998년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ICC는 2008년 10월부터 20명의 중재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년 규칙에 대한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ICC 중재위원회 산하에 41개 국가에서 선임된 175여 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³⁾ 지난 2011년 9월 최종 개정규칙을 발표하였다.⁴⁾ 개정규칙은 기존 1998년 규칙을 대체한 ICC의 새로운 중재규칙으로서 지난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⁵⁾

1)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154.

2) ICC 중재법원에 의해 처리된 중재사건들은 1990년대에는 매년 300여 건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다. 예컨대, 2007년에는 599개의 중재사건, 2008년에는 663개의 사건, 2009년에는 817개의 사건들이 ICC 중재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ICC, *Facts and Figures on ICC Arbitration - 2010 Statistical Report*, ICC, February 2011, available online at <<http://www.iccwbo.org/court/arbitration/index.html?id=41190>> (최종방문 2012. 7. 1).

3) ICC, *Task Force on the Revision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ICC, 2011, available online at <<http://www.iccwbo.org/about-icc/policy-commissions-arbitration/former-task-forces>> (최종방문 2012. 7. 1).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가 개정소위원회 위원(현재 ICC 중재법원 상임위원)으로서 참여하였다.

4) Peter Ashford, "Rule Changes Affect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2, 2011, p. 117.

5) 현재 국제적으로는 국제중재의 자국 유치에 위해 각국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 개정논의가 한창이다. 예컨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2010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고,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는 2011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는 지난 2012년 5월 1일자로 새로운 중재규칙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이하 'KCAB'이라 한다)에서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나아가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11년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제적 추세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KCAB 중재규칙의 2011년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김태훈·차경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C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CC 중재규칙과 관련하여, 오원석(2006)은⁶⁾ ICC 중재규칙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에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식 외(2007)는⁷⁾ IC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상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있다. 석광현(2007)은⁸⁾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개정 중재규칙을 검토하여, 그 주요내용에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건형(2008)은⁹⁾ ICC 중재규칙에서의 중재법원의 역할을 검토하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상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Ashford(2011)는¹⁰⁾ ICC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에 관하여 전반적인 특성과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Pair & Frankenstein(2011)은¹¹⁾ ICC 2012년 개정 중재규칙상 신설된 중재절차의 병합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국내의 연구로는 모두 개정 전의 ICC 중재규칙을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가 미흡해 판단하였다. 특히 ICC 2012년 개정 중재규칙을 다루고 있는 글로는 김갑유(2011)의¹²⁾ 신문 기고가 유일한 편인데, 이 기고에서는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pp. 3-21 참조. 본 논문에서는 KCAB 2011년 중재규칙의 일반적 개정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 6) 오원석, “ICC 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7) 신정식·김용일·박세훈,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8)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9)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10) Peter Ashford, “Rule Changes Affect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2, 2011.
- 11) Lara Pair & Paul Frankenstein,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5, 2011, pp. 1061-1085.
- 12) 김갑유, “국제상업회의의(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2011. 11. 3. 자, 법률신문사, 2011.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주요 개정사항을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C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 규칙상 주요한 개정내용을 중재절차의 효율성·신속성·공정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취지 및 실무적인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ICC 2012년 개정규칙상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제도상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II. 중재절차의 효율성 확보

1. 중재절차의 독점관리

2012년 규칙에서는 ICC 중재법원이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관리할 ‘유일한 기구’(the only body)라고 규정함으로써,¹³⁾ ICC 중재에 따른 독점적 관리를 선언하였다. 동 규칙은 중재당사자들이 ICC 중재규칙에 따르자는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바로 ICC 중재법원이 해당 중재를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⁴⁾

1998년 중재규칙에서는 ICC 중재법원의 배타적 관리기구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규칙대로라면 ICC 중재규칙을 이용하되 ICC 중재법원이 아닌 다른 중재기관이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재절차 방식을 이른바 하이브리드 중재(hybrid arbitration)라고도 하는데,¹⁵⁾ 실무적으로 이에 관하여는 논란이 되고 있다.¹⁶⁾

13) 2012 ICC Rules, Art. 1(2): The Court does not itself resolve disputes. It administers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rbitral tribunal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CC.. *The Court is the only body* authorized to administer arbitrations under the Rules, including the scrutiny and approval of award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It draws up its own internal rules, which are set forth in Appendix II..

14) 2012 ICC Rules, Art. 6(2).

15) 김갑유, 전계글, p. 1.

예컨대, 2009년의 *Insignia Technology Co Ltd vs. Alstom Technology* 사건에서¹⁷⁾ 법원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에서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을 받기로 한 중재합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¹⁸⁾ 그러나 2012년 규칙에 의해 이러한 하이브리드 중재합의는 향후 효력이 없게 되었다.

2. 중재규칙의 적용범위 확장

중재규칙의 적용범위는 어떠한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즉 어떠한 분쟁이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판정권을 받게 되는지의 문제이다.¹⁹⁾ 기존의 중재규칙은 ‘상사분쟁’(business dispute)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²⁰⁾ 그러나 2012년 규칙은 상사분쟁이라는 종전의 문구를 단순히 ‘분쟁’(dispute)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ICC 중재규칙이 적용대상으로 하는 중재사건이 상업적 성격을 가진 분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²¹⁾

ICC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ICC 중재사건 중 약 10% 정도가 국가 또는 국가유사단체가 중재당사자로 참여하였다고 한다.²²⁾ 이러한 추세는 최근 활용되고 있는 국제투자협정에 기반하여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과는 달리 국제법상의 주권면제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의 경우 중재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주권국가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 구속된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며, 그

16) 이에 관하여는 PLC Dispute Resolution, “Hybrid, Multi-Tiered and Carve-Out Dispute Resolution Clauses,” available online at <<http://dispute.practicallaw.com/9-384-8595>> (2012. 7. 4. 최종방문).

17) [2009] SGCA 24.

18) PLC Legal update, “Singapore: Important Developments in 2009,” available online at <<http://arbitration.practicallaw.com/5-501-0459>> (2012. 7. 5. 최종방문).

19)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 81.

20) 1998 ICC Rules, Art. 1(2).

21) 2012 ICC Rules, Art. 1(2).

22) 김갑유, 전계글, p. 2.

와 같이 복잡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주권에 부수하는 속성이기 때문이다.²³⁾

3. 복합적 분쟁을 위한 중재제도

현대의 국제적 상사분쟁은 계약구조가 다면화되고 다수의 관계당사자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중재절차에 수많은 당사자들이 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중재제도는 양자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점에서 현행 국내외의 중재제도는 소송에 비해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특성이 있다.²⁴⁾ 이와 같은 복합적 분쟁(complex disputes)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상사중재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관한 논의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²⁵⁾

복합적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점들로는 ① 다수 당사자들 간의 중재신청, ② 새로운 당사자의 중재절차 참가, ③ 다수의 계약, ④ 중재절차의 병합 등이 거론된다. 2012년 규칙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1) 다수 당사자들 간의 중재신청²⁶⁾

중재는 중재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양자 간 중재가

23)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p. 45.

24) Gary B. Born, *op. cit.*, p. 2067.

25) 이에 관하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Isak Ismail Dore, *Theory and Practice of Multiparty Commercial Arbi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CITRAL Framework*, Graham & Trotman/M. Nijhoff, 1990; Michael F. Hoellering, "Consolidated Arbitration: Will it Result in Increased Efficiency or an Affront to Party Autonomy?,"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 52, 1997, pp. 41-49; S. I. Strong, "Intervention and Joinder as of Righ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 Infringement of Individual Contract Rights or a Proper Equitable Measur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1, 1998, pp. 915-923; Bernard Hanotiau, "Problems Raised by Complex Arbitrations involving Multiple Contracts-Parties-Issues-An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8, 2001, pp. 251-360.

26) 다수 당사자 중재제도에 자세한 것은 Irene M. Ten Cate,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s: Procedural Mechanisms and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U.S. Law",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5, 2004, p. 133 이하 참조.

전형적이다. 다수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공동신청인이나 공동피신청인의 형태로 쌍방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⁷⁾ 1998년 중재규칙도 이러한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 간의 중재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다수 당사자를 둘러싼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인의 선임과 관련되는 약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²⁸⁾ 따라서 다수 당사자 모두가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절차를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중재인이 제3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복잡한 분쟁 자체를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반면에 소송제도 하에서는 공동소송제도, 소송참가·인수제도, 소송고지제도 등에 의하여 다수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쌍방 간의 중재절차만을 전제로 한 기존의 중재규칙은 실무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²⁹⁾

이와 같은 실무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 중재규칙 제10조는 다수 당사자들이 포함된 중재의 경우 어떠한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었다. 다만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재위탁요건서(Terms of Reference)가³⁰⁾ 서명되거나 또는 ICC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당사자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³¹⁾

2012년 규칙 제10조의 규정은 다수 당사자 간의 복합적 중재절차를 합일적·확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① 채권자, 채무자 및 보증인 간에 발생한 분쟁, ② 도급인, 수급인

27)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p. 197.

28) 1998 ICC Rules, Art. 10.

29) 橋本 明·広瀬元康, “ICC仲裁規則の2012年改正の概要”, 「国際商事法務」, 第39卷 第12号, 国際商事法研究所, 2011, p. 1703.

30) Terms of Reference는 쟁점정리사항서 또는 중재위탁요지서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오원석, “ICC 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p. 81-106 참조.

31) 2012 ICC Rules, Art. 8(1).

및 하수급인 간 발생한 분쟁, ③ 중개업자 또는 위탁매매업자가 개입된 분쟁 등을³²⁾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가당사자의 참가 - 주관적 병합

1998년 규칙은 제3자가 중재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2년 규칙은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제3자를 절차에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의 참가와 관련된 신청서를 ICC 사무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³³⁾ 그러나 이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ICC 사무국이 참가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추가당사자(joinder)에 대한 중재의 개시일은 ICC 사무국에 참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간주된다.³⁴⁾ 또한 일단 중재인이 선임된 후에는 더 이상 추가당사자를 참가시킬 수 없다.

추가당사자를 참가시켜 분쟁해결 절차를 단일화하는 것은 분쟁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심리의 중복이나 절차상의 모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본래 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청구의 병합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보통 청구의 병합은 복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는 객관적 병합과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이나 쌍방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병합

32) *Karaha Bodas Co.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364 F.3d 274 (5th Cir. 2004); *Versailles Cour d'appel*, 1990. 3. 7, 1991 Rev. arb. 326; *Nicor Int'l Corp. v. ElPaso Corp.*, 292 F.Supp.2d 1357 (S.D.Fla. 2003).

33) 참가신청서에는 ① 기존 중재의 사건번호, ② 추가당사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완전한 명칭, 설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012 ICC Rules, Art. 8(2)).

34) 2012 ICC Rules, Art. 7(1): A party wishing to join an additional party to the arbitration shall submit its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additional party (the "Request for Joinder") to the Secretariat. The date on which the Request for Joinder is received by the Secretariat shall, for all purposes, be deemed to be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arbitration against the additional party. Any such joinder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6(7) and 9. No additional party may be joined after the confirmation or appointment of any arbitrator, unless all parties, including the additional party, otherwise agree. The Secretariat may fix a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a Request for Joinder.

으로 구분된다.³⁵⁾ 이 점에서 추가당사자 참가 절차는 주관적 병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공동 중재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다.

2002년에는 ICC 사무국에 접수되는 질의서 중 거의 33% 정도는 중재절차상 다수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한 문제들이라고 한다.³⁶⁾ 즉, 2012년 규칙 제7조의 추가당사자 참가제도는 향후 이와 관련한 실무적 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재절차가 제기된 해당 상사분쟁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가 주체적으로 절차참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2012년 규칙상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복합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신속성을 담보로 하는 중재절차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다수의 계약

복합적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계약(multi-contract)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는 실무상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인데, 1998년 규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³⁷⁾

2012년 규칙에서는 2개 이상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2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신청은 중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⁸⁾ 즉, 단일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든지 다수의 중재합의가 존재하든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다수의 계약과 관련된 중재신청은 단일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p. 649

36) Anne-Marie Whitesell & Eduardo Silva-Romero,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Recent ICC Experience," in *Complex Arbitrations*, ICC, 2003, p. 7.

37) Bernard Hanotiau, *Complex Arbitrations: Multiparty, Multicontract, Multi-Issue and Class Ac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 171.

38) 2012 ICC Rules, Art. 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6(3)-6(7) and 23(4), claim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more than one contract may be made in a single arbitration,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claims are made under one o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under the Rules.

다만 ① 다수의 계약과 관련한 중재신청의 바탕이 되는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② 해당 신청이 단일 중재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중재 당사자들이 동의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동의가 있다고 중재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단일 절차가 허용된다.³⁹⁾

4) 중재절차의 병합 - 객관적 병합

복합적 분쟁과 관련하여 복수의 중재절차를 병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1998년 규칙은 이에 관하여 약간의 조항만을 둘 뿐이었다. 즉, 분쟁의 본질적 원인이 동일한 복수의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청구를 추가하는 시기와 그 제한에 관한 조항만을 마련해두고,⁴⁰⁾ 명문의 규정은 두지 않았다.⁴¹⁾ ICC 중재법원 또한 이러한 중재절차의 병합에 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⁴²⁾ 예컨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ICC 중재법원은 24개의 병합신청 중 단 8개만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부 거절하였다고 한다.⁴³⁾

2012년 규칙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2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의 중재로 병합(consolidation)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객관적 병합을 규정한 것으로, ① 당사자들이 병합에 동의한 경우, ② 중재의 모든 신청이 동일한 중

39) 2012 ICC Rules, Art. 6(4).

40) 1998 ICC Rules, Arts. 4(6), 9.

41) 중재절차의 병합 문제에 관하여는 최근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Stavros L. Brekoulakis, *Third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 108-109; Thomas J. Stipanowich, "Arbitration: The New Litigation,"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2010, pp. 1-5; S. I. Strong, "The Sounds of Silence: Are U.S. Arbitrators Creating Internationally Enforceable Awards When Ordering Class Arbitration in Cases of Contractual Silence or Ambiguity?,"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0, 2009, pp. 1017-1039; Erik Schäfer, Herman Verbist & Christophe Imhoos, *ICC Arbitration in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p. 33-34.

42) Michael W. Bühler & Thomas H. Webst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2nd ed., Thomson/Sweet & Maxwell, 2008, p. 62.

43) Simon Greenberg, José Ricardo Feris & Christian Albanesi, "Consolidation, Joinder, Cross-claims,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s: Recent ICC Experience," in *Multiparty Arbitration*, ICC Institute of World Business Law, 2010, p. 164.

재합의에 따르는 경우, 또는 ③ 중재의 신청이 2개 이상의 중재합의에 따른 경우에도 중재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이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병합이 인정된다.⁴⁴⁾

국제상사계약상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는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서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갖는 사안이 각기 다른 중재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절차적 모순이며 비용의 낭비이다.⁴⁵⁾ 이 점을 고려하면 2012년 규칙상의 중재절차의 병합규정은 중재판정의 모순과 저촉을 막고 동시에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4. 중재신청액의 특정

중재신청액은 당사자들이 예납하여야 할 중재비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 및 일정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⁴⁶⁾ 1998년 규칙에서는 단순히 '청구액을 표시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었다.⁴⁷⁾ 그러나 2012년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에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그 액수를, 기타의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의 추정액을 특정하도록 하였다.⁴⁸⁾

44) 2012 ICC Rules, Art. 10: The Court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consolidate two or more arbitrations pending under the Rules into a single arbitration, where: a) the parties have agreed to consolidation; or b) all of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or c) where the claims in the arbitrations are made under more than on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s are between the same parties, the disputes in the arbitrations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same legal relationship, and the Court finds the arbitration agreements to be compatible. In deciding whether to consolidate, the Court may take into account any circumstances it considers to be relevant, including whether one or more arbitrators have been confirmed or appointed in more than one of the arbitrations and, if so, whether the same or different persons have been confirmed or appointed. When arbitrations are consolidated, they shall be consolidated into the arbitration that commenced first, unless otherwise agreed by all parties.

45) Julie C. Chiu, "Consolida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7, 1990, p. 55.

46) 김갑유, 전계글, p. 2.

47) 1998 ICC Rules, App. III, Art. 1(2).

2012년 규칙은 중재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중재신청액 특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의 일정과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Ⅲ. 중재절차의 신속성 강화

1. 중재절차의 개시·진행·종료

중재는 통상 단심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중재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⁴⁹⁾ 1998년 규칙과는 달리, 2012년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각 단계를 신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본안 심리전 중재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각 당사자가 최초로 제출하는 중재신청서의 서면은 분쟁의 실정을 파악하는 핵심적 자료이다. 중재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명확하면 할수록 사안의 쟁점은 구체화되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본안 심리의 신속화로 이어진다. 이에 2012년 규칙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중재신청서나 답변서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동 규칙은 이러한 제출서면상의 기재사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예컨대, 중재신청서상 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본질과 상황 및 신청의 근거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비재산적 청구에 대해서도 그 금전적인 평가액의 추정을 기재하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중재합의에 따라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각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⁵⁰⁾

이처럼 2012년 규칙은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중재법원뿐만 아니라 당사자사이에서도 분쟁의 세부적인 쟁점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조기에

48) 2012 ICC Rules, Art. 4(3)(d).

49)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7판, 삼영사, 2012, p. 398.

50) 2012 ICC Rules, Art. 4(3)(c)(d)(f).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신속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⁵¹⁾

둘째, 중재인의 선임절차를 보다 신속화하기 위해 ICC 중재법원이 직접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 규칙에서는 ICC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의 제안에 따라서 이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만약 국내위원회가 제안하는 자가 중재인 적격성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국내위원회가 ICC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ICC 법원이 중재인 선임에 대한 제안을 재차 국내위원회에 구하든가 아니면 타국의 국내위원회에 그 제안을 요구하여야 했다. 다만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또 당사자의 이의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ICC 법원이 자체적으로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명시하고 있었다.⁵²⁾

그러나 2012년 규칙은 기존의 규칙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본안 심리 전의 절차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ICC 법원이 직접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다. 예컨대, ① 1인 이상의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국가임을 주장하는 경우, ② 중재법원이 국내위원회 또는 국내그룹이 없는 국가 또는 영역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재법원 의장이 자신의 의견상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이 있음을 중재법원에 확인시키는 경우에는 ICC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중재인으로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³⁾

한편 2012년 규칙은 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국내위원회에 대해 중재인 후보제안의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⁴⁾ 만

51) 橋本 明·廣瀬元康, 前掲論文, p. 1705.

52) 1998 ICC Rules, Art. 9(3)(4).

53) 2012 ICC Rules, Art. 13(4): The Court may also appoint directly to act as arbitrator any person whom it regards as suitable where: a) one or more of the parties is a state or claims to be a state entity; or b) the Court consider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appoint an arbitrator from a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re is no National Committee or Group; or c) the President certifies to the Court that circumstances exist which, in the President's opinion, make a direct appointment necessary and appropriate.

약 국내위원회가 해당 기한까지 중재인 후보자를 제안하지 않거나 또는 ICC 법원이 해당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국내위원회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든지 아니면 ICC 법원이 직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⁵⁵⁾

셋째, 본안 심리의 전제로서 관할 등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에 전속권을 부여하였다. 실무적으로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지연요인으로 지목되는 문제 중 하나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의 관할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⁵⁶⁾ 1998년 규칙상으로는 ICC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지므로 중재판정부에 의한 심리가 개시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에 2012년 규칙에서는 관할권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의 결정 여부를 ICC 법원을 개입시키는 일 없이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⁵⁷⁾ 다만 이 경우에도 ICC 법원은 중재진행 여부와 진행범위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를 긍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⁵⁸⁾ 중재절차는 진행되어야 한다.⁵⁹⁾

넷째, 본안 심리에서 당사자 심문이 종결한 이후,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중재판정문 초안(the draft award)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1998년 규칙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단심제인 중재절차상 중재판정의 오판과 실수를 최소화하고,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초안제출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⁰⁾ 즉, 2012년 규칙에

54) 2012 ICC Rules, Art. 13(3).

55) 실무적으로는 제3국의 국가의 국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컨대,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분쟁의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이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의 제3국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갑유, 전계서, p. 154).

56) 예컨대, 중재합의의 부존재, 유효성, 범위 또는 피신청인의 항변 등으로 관할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57) 2012 ICC Rules, Art. 6(3).

58) 예컨대, 2012 ICC Rules, Art. 6(4)(i)(ii)의 경우.

59) 2012 ICC Rules, Art. 6(4).

60) James M. Gaitis,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bitration Procedure: The Need for

서는 최종 심리와 최종 중재판정과의 시간적 간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중재판정문 초안 제출일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중재판정부는 최종 심리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① 중재판정문에서 결정될 사안에 관하여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고, ②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중재법원에 중재판정문 초안을 제출할 예정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⁶¹⁾

이러한 규정은 최종적인 중재판단이 내려지는 기간 동안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초안 작성 과정상 일정한 기한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다.⁶²⁾ 또한 2012년 규칙은 절차적 신속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인에게 기한준수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고 중재인이 이 기한을 준수하면 중재인 보수액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규정 또한 마련해두고 있다.⁶³⁾

2. 사건관리제도

2012년 중재규칙 제22조는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은 분쟁의 복잡성 및 분쟁대상금액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every effort to conduct)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중재판정부와 각 중재당사자에게 중재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규칙은 사건관리(case management) 제도를 신설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⁶⁴⁾

사건관리 제도란 중재판정부가 해당 중재사건에 관한 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소집하여 중재절차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할 수

a Rule Providing a Limited Opportunity for Arbitral Reconsideration of Reasoned Award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5, 2004, pp. 87–88.

61) 2012 ICC Rules, Art. 27.

62) 橋本 明·広瀬元康, 前掲論文, p. 1706.

63) 2012 ICC Rules, App. III, Art. 2(2).

64) Laurant San Roman Guijarro, “The Only Way Out is Through?,”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66, 2012, p. 885.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⁵⁾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위탁요건서를 작성할 때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as soon as possible)에 중재절차의 수단과 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기 위한 사건관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⁶⁶⁾ 사건관리 회의의 개최는 중재판정부의 ‘의무’이며, 중재판정부는 효과적인 사건관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적 수단’(procedural measures)을 채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⁶⁷⁾ 절차적 수단에는 2012년 규칙의 부칙 IV에 명시된 ‘사건관리기술’(case management techniques)이 포함될 수 있다.

사건관리기술은 중재절차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들을 상식과 실무 경험에 기초하여 미리 고안해 두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①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의 특징, ②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 ③ 서면 제출 횟수의 제한 등이 포함되며, ④ 당사자들이 고려할만한 문서개시 관련 쟁점 리스트도 제시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관리 제도는 국제중재사건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건관리 회의로 진행될 것이다.⁶⁸⁾ 나아가 중재인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사건관리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심리 촉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의 중재비용을 정할 때,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중재에 참여하였는지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⁶⁹⁾ 이때, 사건관리 회의의 참석 여부 등이 그러한 산

65) Whitney Debevoise & Mallory B. Silberman, “New ICC Arbitration Rules,” *Arnold & Porter LLP Advisory*, December 2011, p. 2.

66) 2012 ICC Rules, Art. 24(1): When drawing up the Terms of Reference 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vene a case management conference to consult the parties on procedural measures that may be adopted pursuant to Article 22(2). Such measures may include one or more of the case management techniques described in Appendix IV.

67) 이러한 재량권은 중재당사자들의 합의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2012 ICC Rules, Art. 22(2)).

68) José Ricardo Feris, Cheng-Yee Khong & Victoria Orłowski, “A New Era fo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IBA Arbitration News*, Vol. 16, No. 2, 2011, p. 14.

69) 2012 ICC Rules, Art. 37(5).

정기준의 하나로 적용될 수 있다.⁷⁰⁾

3. 긴급중재인 제도

1) 도입

중재절차에서도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provisional measure)이 인정되고 있다.⁷¹⁾ 1998년 규칙은 중재의 각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대해 잠정조치 및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⁷²⁾ 이러한 임시적 처분은 일반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⁷³⁾ 당사자들이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법원을 피하고자 하거나, 임시적 처분이 나올 때까지의 법원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가의 법원에 각각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도 생긴다.⁷⁴⁾ 기존 규칙에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 처분을 얻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 결과 임시적 처분을 구하기 위해 중재당사자는 ICC 중재와는 별도로 국내의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해야 했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⁷⁵⁾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여 2012년 규칙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중재당사자들이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제도를 도입하였다. 긴급중재인 제도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70) 보다 구체적으로는 ICC Commission Report, "Techniques for Managing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When it is Permitted or Requir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CC Dispute Resolution Library*, 2011 참조.

71) 목영준, 전계서, p. 182.

72) 1998 ICC Rules, Art. 23(1).

73) 이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다.

74) 김갑유, 전계서, p. 275.

75) Douglas C. Rennie and Peter Sherwin, "Interim Relief Unde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Guidelines: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0, 2010, pp. 319-320.

에 당사자의 긴급한 임시적 처분 신청이 있으면 중재기관이 신속히 긴급중재인을 선임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2012년 규칙상 중재의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 내지는 보전적 처분을 얻기 위해 ICC 법원에 긴급중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⁷⁶⁾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2011년 국제중재규칙에서는 긴급중재인 제도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하여는 향후 도입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적용범위

2012년 규칙은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절차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 피신청인의 방어 기회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⁷⁷⁾

첫째, 중재규칙상의 중재합의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즉, 2012년 규칙은 ‘중재합의’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것일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재신청이 2012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의 중재합의가 2011년에 체결되었다면 1998년 규칙이 적용되어 긴급중재인의 선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적인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⁷⁸⁾

둘째, 각 당사자들이 긴급중재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이는 2012년 중재규칙이 이른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⁷⁹⁾

셋째, 각 당사자들이 보전적·임시적 또는 유사한 처분을 허용하는 다른 중

76) Whitney Debevoise & Mallory B. Silberman, *op. cit.*, p. 2.

77) 2012 ICC Rules, Art. 29(6).

78) 이와는 반대로 스톡홀름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e of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의 중재규칙이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의 중재규칙은 중재규칙 개정 후 신청된 사건이라면 긴급중재인 제도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CC Arbitration Rules, Art. 32; ICDR Arbitration Rules, Art. 37).

79) 한편 몇몇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특별히 합의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의 긴급중재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 전 절차(pre-arbitral procedure)에 합의한 경우이다.

3) 신청

긴급중재인 제도는 긴급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ICC 사무국에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된다. 즉,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 서류가 송부되기 전에 긴급처분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⁸⁰⁾

당사자가 본안의 중재절차를 신청하기 전이어도 지장은 없으나 그 경우는 ICC 사무국이 긴급처분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 10일 이내에 본안의 중재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이 준수되지 않으면, ICC 중재법원의 의장은 긴급중재인 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⁸¹⁾ 따라서 긴급중재인 절차의 신청서는 중재신청서 접수 전에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판정부가 긴급중재인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⁸²⁾

긴급처분의 절차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ICC 법원의 내부규칙(2012년 규칙 부속규정 II)의 규정에 따라 긴급중재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신청서에는⁸³⁾ ① 각 당사자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이름, ② 긴급처분 신청 취지, ③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④ 동일한 분쟁에 대해 이미 계쟁 중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⑤ 중재합의, ⑥ 주요한 증거 및 서류, ⑦ 신청비용 및 증빙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당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임의적 자료를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재법원의 의장이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긴급중재인 절차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ICC 사무국은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송달한다. 만약 해당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그 취지가 통지된다.⁸⁴⁾ 즉, 긴급중재인

80) 橋本 明·広瀬元康, 前掲論文, p. 1708.

81) 2012 ICC Rules, App. V, Art. 1(6).

82) 김갑유, 전계서, p. 276.

83) 2012 ICC Rules, App. V, Art. 1(3).

84) 2012 ICC Rules, App. V, Art. 1(5).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이를 시도한 사항이 피신청인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긴급중재인 절차를 신청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해당 신청의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한 분쟁에 대해 적절한 상황에서 관할 사법당국에 긴급한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

4) 긴급중재인의 선임

ICC 사무국이 당사자의 긴급중재인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는 ICC 중재법원의 의장은 최단 시간 내에⁸⁵⁾ 긴급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중재사건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된 후에는 긴급중재인이 선임될 수 없다.⁸⁶⁾ 일단 긴급중재인이 선임되었다면, ICC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기록을 긴급중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자들의 모든 서면 연락은 긴급중재인에게 직접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 및 사무국에 사본을 제출하고, 긴급중재인이 당사자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신은 사무국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⁸⁷⁾

긴급중재인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기피신청이 가능하다.⁸⁸⁾ 긴급중재인의 선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긴급중재인의 선임에 대한 통지 수령 이후로부터 3일 이내에 또는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ICC 중재법원에서 결정한다. 선임된 긴급중재인은 선임시점으로부터 최단기간(통상 2일 이내) 내에 절차일정표(procedural timetable)를 작성하고 절차진행을 개시한다. 또한 선임된 긴급중재인은 본안 심리를 위한 중재인이 될 수 없다.

5) 명령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에 관한 판단은 통상적인 중재판정(award)이 아닌 명령(order)의 방식에 의한다.⁸⁹⁾ 긴급중재인은 원칙적으로 기록송부 이후 15일

85) 통상적으로 사무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이다.

86) 2012 ICC Rules, App. V, Art. 2(2).

87) 2012 ICC Rules, App. V, Art. 2(3).

88) 2012 ICC Rules, App. V, Art. 3.

이내에 이러한 긴급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중재인의 청구 또는 ICC 법원 의장의 재량에 의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⁹⁰⁾

긴급처분의 신청부터 그 결정까지 3주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처분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⁹¹⁾

긴급중재인의 명령은 ① ICC 법원의 의장이 긴급중재인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② 중재법원이 긴급중재인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③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먼저 내리는 경우, ④ 명령 이전에 모든 신청이 철회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⁹²⁾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해당 명령에 대한 소명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이러한 소명에 의해 해당 명령을 수정, 종료 및 무효로 할 수 있다.⁹³⁾ 또한 본안 심리를 위해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의 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⁹⁴⁾

6) 비용

2012년 규칙은 긴급중재인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비용을 명시하고 있다.⁹⁵⁾ 긴급처분의 신청인은 미화 40,000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ICC 관리비용 미화 10,000 달러, 긴급중재인의 보수 및 비용 미화 30,000 달러로 구성된다. ICC 사무국이 이러한 긴급중재인 비용을 수납하기 전에는 신

89) 2012 ICC Rules, Art. 29(2). 대다수의 다른 중재규칙들은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은 명령뿐만 아니라 판정의 형식으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90) 2012 ICC Rules, App. V, Art. 6(4).

91) 참고로 SCC 중재규칙은 긴급중재인의 선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기간적용에 있어 중재기관들 간에 차이가 조금씩 있다.

92) 2012 ICC Rules, App. V, Art. 6(6).

93) 2012 ICC Rules, App. V, Art. 6(8).

94) 2012 ICC Rules, Art. 29(3).

95) 2012 ICC Rules, App. V, Art. 7.

청은 통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긴급중재인 절차는 중재비용과 별도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분쟁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서 긴급중재인 신청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4. 전자적 통신수단의 활용

2012년 규칙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연락, 기한 등과 관련하여 신속성 담보를 위해 전자적 통신수단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예컨대, ICC 사무국이나 중재판정부가 각 중재당사자와 전자메일로 통신하는 일도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⁹⁶⁾

1998년 규칙에서 규정했던 전보나 텔렉스 등과 같은 명칭의 통신수단은 삭제되었다.

IV. 중재절차의 공정성 담보

2012년 규칙은 기존 규칙에 비해, 공정한 중재제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규정들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등 공정성 담보제도를 구축하였다. 예컨대, 중재인의 공정성 확보 조항이 추가되었고, 비밀유지 규정이 개정되었다.

1. 중재인의 공정성

중재인은 공정하고(impartial) 독립적이며(independent) 중립적(neutral)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입법례가 이에 따르고 있다.⁹⁷⁾ 즉, 중재절차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재인이 각 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중립적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⁹⁸⁾

96) 2012 ICC Rules, Art. 3(2).

97) 목영준, 전계서, p. 131.

1998년 규칙은 모든 중재인은 그 중재에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시각에서 중재인의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모든 사실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재법원의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⁹⁹⁾ 그러나 중재인의 공정성(impartiality)에¹⁰⁰⁾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2012년 규칙은 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 독립성(independence) 조건에 추가하여 공정성 개념을 명문화하였다. 동 규칙은 이러한 중재인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인으로 하여금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부분을 진술서상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중재절차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생겼을 경우 ICC 사무국 및 각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도록 하였다.¹⁰¹⁾

문제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이다.¹⁰²⁾ 2012년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가 제정한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지침’(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98) 중재인의 공정성에 관하여는 Leon Trakman, “Th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s Reconsidered,”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Vol. 10, 2007, pp. 999-1018; Ruth Mackenzie & Philippe Sands,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tional Judg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4, 2003, pp. 271-285; Anne K. Hoffmann, “Duty of Disclosure and Challenge of Arbitrators: The Standard. Applicable Under the New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German Approach,”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21, 2005, pp. 427-445; Olga K. Byrne, “A New Code of Ethics for Commercial Arbitrators: The Neutrality of Party-Appointed Arbitrators on a Tripartite Panel,” *Fordham Urban Law Journal*, Vol. 30, 2003, pp. 1815-1835 참조.

99) 2012 ICC Rules, Art. 7(1)(2).

100) Impartiality는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정성으로 번역한다. 용어 번역의 모호한 점은 있으나, neutrality를 중립성으로 번역한다.

101) 2012 ICC Rules, Art. 11(2).

102) 중재인의 공정성 기준에 관하여는 Catherine A. Rogers, “Regulating International Arbitrators: A Functional Approach to Developing Standards of Conduct,”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0, 2004, pp. 53-96 참조.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이 국제상사중재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¹⁰³⁾

2012년 규칙상 중재인의 공정성 확보 규정은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긴급중재인의 선임절차에도 적용된다. 즉, 긴급중재인도 선임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에 관하여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¹⁰⁴⁾

2. 기밀정보 유지 및 보호

중재판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재당사자들의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중재절차의 진행 및 중재판정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1998년 규칙에서는 중재재판부가 중재사건과 관련한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순한 조항만을 둘 뿐,¹⁰⁵⁾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2012년 규칙에서는 중재사건에 관한 비밀 이외에도 중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는 중재판정부의 명령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⁶⁾ 즉, 2012년 규칙에서는 기존 규칙에 비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확대된 것이다.

V. 시사점 및 결론

ICC의 중재절차는 ICC 중재법원, ICC를 구성하는 국내위원회 및 개별 중재사건에 관여하는 중재판정부 간의 유기적인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¹⁰⁷⁾ 2012년 ICC 중재규칙의 기본적 이념도 이러한 유기적인

103) 이에 관하여는 IBA, *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BA, 2004 참조.

104) 2012 ICC Rules, App. V, Art. 2(4)(5).

105) 1998 ICC Rules, Art. 20(7).

106) 2012 ICC Rules, Art. 22(3).

협력과 공조 하에 실무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중재절차의 효율성·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절차상 비용의 합리화를 개정의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¹⁰⁸⁾

2012년 중재규칙은 전체적으로 1998년 규칙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문을 정리하고 몇 가지 신설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폭적인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적 중재제도를 마련한 것과 신속성 강화를 위해 사건관리회의와 긴급중재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ICC의 2012년 중재규칙의 주요한 개정사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⁹⁾

첫째, 중재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① ICC 중재규칙에 따른 ICC 중재법원의 중재절차의 독점적 관리를 명시하였고, ② 중재규칙의 적용범위를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나 국가유사단체도 ICC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③ 다수 당사자, 다수 계약의 추가 및 병합에 관한 규정 등 복합적 중재절차 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 중재절차의 신속성 강화를 위해, ① 중재절차의 각 단계별 절차규정을 개정하고, ② 사건관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③ 임시적 처분을 위한 긴급중재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셋째, 중재절차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① 중재판정 예정일 고지규정, ② 중재인의 공정성 규정, ③ 비밀유지명령 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ICC는 중재규칙의 2012년 개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국제상사 분쟁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국제중재사건의 유치와 관련하여 경쟁적 우위에 서고자 한다.¹¹⁰⁾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CAB)도 2011년에

107)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73.

108) Peter Ashford, *op. cit.*, p. 118.

109) John Beechey, “ICC Arbitration Rules 2011 - Changes & Challenges,” *ICC Austria Conference*, October, 2011, p. 1, available online at <http://www.udruga-korporativnih-pravnika.hr/dld/icc_einladung%202.pdf> (2012. 7. 20. 최종방문).

110) 실제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중재기관 중에서도 ICC 중재법원에 대한 중재사건 의뢰가 가장 높았고, 중재지 선호도도 런던, 파리, 뉴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Cho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vailable online at <<http://www.arbitrationonline.org/>>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말까지 법무부·서울시·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즉,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지역의 주요한 국제중재 센터에 버금가는 중재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경쟁적인 중재제도 제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시설과 장소가 국제중재 유치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중재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또한 공정하게 처리하는 법제의 운용능력이다.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다수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은 법제도의 국제적 호환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이다. 즉, KCAB 국제중재규칙의 활용도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으로 ICC 2012년 중재규칙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둔다.

첫째, KCAB 중재규칙에 있어서도 다수 당사자 간의 분쟁, 새로운 당사자의 참가, 중재절차의 병합 등 복합적 국제중재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절차상 당사자들의 지위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임시적 처분의 효율적인 제도적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ICC 중재규칙상의 사건관리제도와 같은 KCAB 국제중재규칙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적인 법제 인프라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_____,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법률신문 2011. 11. 3. 자, 법률신문사, 2011.
-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서정일,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신정식, 김용일, 박세훈,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 _____,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안건형·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 오원석, “ICC 중재규칙의 위탁조건(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 _____, “ICC중재에서 중재비용의 결정과 할당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 _____, 이경화,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 장승화,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 중재인의 입장에서”, 「중재」, 제323호, 대한상사중재원, 2007.
-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7판, 삼영사, 2012.

山本和彦・山田 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橋本 明・広瀬元康, “ICC仲裁規則の2012年改正の概要”, 「国際商事法務」, 第39巻
第12号, 国際商事法研究所, 2011.

Ashford, Peter, “Rule Changes Affect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22, 2011.

Beechey, John, “ICC Arbitration Rules 2011 – Changes & Challenges,” *ICC Austria
Conference*, October, 2011.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Brekoulakis, Stavros L., *Third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Bühler, Michael W. and Webster, Thomas H., *Handbook of ICC Arbitration:
Commentary, Precedents, Materials*, 2nd ed., Thomson/Sweet & Maxwell,
2008.

Chiu, Julie C., “Consolida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7, 1990.

Debevoise, Whitney and Silberman, Mallory B., “New ICC Arbitration Rules,” Arnold
& Porter LLP, Advisory, December 2011.

Dore, Isaak Ismail, *Theory and Practice of Multiparty Commercial Arbitr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NCITRAL Framework*, Graham & Trotman/M.
Nijhoff, 1990.

Gaitis, James M., “International and Domestic Arbitration Procedure: The Need for a
Rule Providing a Limited Opportunity for Arbitral Reconsideration of
Reasoned Award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5,
2004.

Guijarro, Luran San Roman, “The Only Way Out is Through?,”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Vol. 66, 2012.

Hanotiau, Bernard, *Complex Arbitrations: Multiparty, Multicontract, Multi-Issue and
Class Ac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air, Lara and Frankenstein, Paul, “The New ICC Rule on Consolidation: Progress or

Change?,”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5, 2011.

Schäfer, Erik, Verbist, Herman and Imhoos, Christophe, *ICC Arbitration in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Rules of Arbitration 2012

Kim, Young Ju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published revised rules of arbitration, which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2012 (the ICC Rules 2012). The ICC Rules 2012 apply to all arbitrations commenced on or after 1 January 2012,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mit their arbitration to the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eir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6(1)).

The ICC Rules 2012 explicitly require both the arbitrators and the parties to make every effort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The changes will force participants to define more aspects of their claims and outline the merits of the dispute earlier on in the process. The Rules also contain new penalties for behaving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process's efficiency. The new Rules permit the tribunal, when making allocating costs,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each party has conducted the arbitration in an expeditious and cost-effective manner. Entirely new provisions relate to the emergency arbitrators, case management, and multi-party arbitrations

The ICC Rules 2012 take into account developments in arbitration practice and procedure, and in information technology, since the last revision of the rules in 1998, the aim being to provide modern and flexible procedures that promote efficiency in the arbitral process.

Key Words : Arbitration, ICC Rules 2012, Emergency Arbitrator, Case Management, Multiparty Arbitration
